

#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43
----------	-----

제출연월일 : 2019년 8월 6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 1. 제안이유

- 가. 본청 신청사를 현 교육시설관리본부 부지에 건립함에 따라 교육시설 관리본부를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봉사관으로 이전하고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
- 나. 학생교육원 천마산야영교육장의 소재지 변경 및 영월야영교육장 신설에 따른 명칭과 소재지 추가

## 2. 주요내용

- 가. 교육시설관리본부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 (안 제39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196 (하월곡동)
- 나. 학생교육원 야외교육장 소재지 변경 및 신설 (안 별표2)
  - 천마산야영교육장 소재지 변경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 산14
  - 영월야영교육장 신설
    -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판운리 304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별첨 4]
  -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
  - 2) 「지방교육행정 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별첨 2]

다. 협의 : 예산담당관, 학교지원과, 교육재정과, 교육시설안전과,  
체육건강문화예술과 협의완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1]
- 2) 입법예고(2019. 7. 19. ~ 7. 26.) : 의견 없음
- 3) 교육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 5) 성별영향분석평가 :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확인서 [별첨 3]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중 “용산구 두텁바위로 27 (후암동)” 을 “성북구 종암로 196 (하월곡동)” 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분원 및 야외교육장의 명칭·위치(안 제20조 관련)

구분	분원 및 야외교육장명	소재지
분원	글로벌문화·언어체험교육원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불기산길 88
	대성리교육원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모꼬지로 61
	대천임해교육원	충청남도 보령시 해수욕장3길 26 (신후동)
	퇴촌야영교육원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천진암로 1152-51
야외 교육장	천마산야영교육장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 산14
	영월야영교육장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판운리 304

【별첨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설치) ① (생 략) ② 교육시설관리본부는 서울특별시 용 산구 두텁바위로 27 (후암동)에 둔 다.  [별표 2]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분원 및 야외교육장의 명칭 · 위치(제20조 관련)			제39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성북구 종암로 196 (하월곡동)-- ----.  [별표 2]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분원 및 야외교육장의 명칭 · 위치(안 제20조 관련)		
구분	분원 및 야외교육장명	소재지	구분	분원 및 야외교육장명	소재지
분원	글로벌문화 · 언어체험 교육원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불기산길 88	분원	글로벌문화 · 언어체험 교육원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불기산길 88
	대성리 교육원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모꼬지로 61		대성리 교육원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모꼬지로 61
	대천입해 교육원	충청남도 보령시 해수욕장3길 26 (신후동)		대천입해 교육원	충청남도 보령시 해수욕장3길 26 (신후동)
	퇴촌야영 교육원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천진암로 1152-51		퇴촌야영 교육원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천진암로 1152-51
야외 교육장	천마산야영 교육장	경기도 남양주시 천마산로14번길 10-656 (호평동)	야외 교육장	천마산야영 교육장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 산14
	<신 설>			영월야영 교육장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판운리 304

【별첨 2】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교육시설관리본부 이전**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가 현 교육시설관리본부 부지에 건립됨에 따라 교육시설관리본부 이전이 필요하게 됨

※ 관련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에 따른 교육시설관리본부 이전사업 추진계획 [학교지원과-14238(2017.09.25.)]

2. **비용추계의 전제**

- 현재 교육시설관리본부 조직 구성에 따라 기존 유휴시설(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봉사관) 보수하여 사용
- 공사비는 교육시설안전과의 교육환경개선사업 단위사업별 단가 적용하여 산출
- 용역비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산출
- 청사 이전에 따른 이사비는 견적가 적용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018)	2차년도 (2019)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교육비특별회계	185,836	3,381,164				3,567,000
	<b>소계(a)</b>	<b>185,836</b>	<b>3,381,164</b>				<b>3,567,000</b>
세출	설계용역비	185,836	26,944				212,780
	공사비 등		3,354,220				3,354,220
	<b>소계(b)</b>	<b>185,836</b>	<b>3,381,164</b>				<b>3,567,000</b>
□ 총 비용(a-b)		0	0				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018)	2차년도 (2019)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국비						
	시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자체수입)		185,836	3,381,164				3,567,000
합계		185,836	3,381,164				3,567,000

5. 덧붙이는 의견 : 없 음

6. 작성자 : 교육시설관리본부 시설1과 조성 (☎ 02-2178-9023)

Ⅱ .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설계용역비		○ 3,227,920천원	× 6.592 %	212,780
<b>소 계</b>				<b>212,780</b>
공 사 비	구조보수	○ 21,000천원	× 1 식	21,000
	바닥개선	○ 294,000천원	× 1 식 (49실)	294,000
	출입문	○ 137,200천원	× 1 식 (49실)	137,200
	실내창호	○ 137,200천원	× 1 식 (49실)	137,200
	장애인편의시설	○ 250,000천원	× 1 식	250,000
	석면텍스교체	○ 95,850천원	× 1 식 (13.5실)	95,850
	내부도장	○ 107,800천원	× 1 식 (49실)	107,800
	외부도장	○ 42,500천원	× 1 식 (50실)	42,500
	계단실도장	○ 15,600천원	× 1 식 (12실)	15,600
	냉난방	○ 324,380천원	× 1 식 (49실)	324,380
	급수시설	○ 30,000천원	× 1 식	30,000
	도시가스시설	○ 30,000천원	× 1 식	30,000
	소방시설	○ 73,500천원	× 1 식 (49실)	73,500
	화장실개선	○ 319,600천원	× 1 식 (170m <sup>2</sup> )	319,600
	전기시설	○ 490,000천원	× 1 식 (49실)	490,000
	통신시설	○ 294,000천원	× 1 식 (49실)	294,000
	전력 인입	○ 200,000천원	× 1 식	200,000
	한전주 이설	○ 50,000천원	× 1 식	50,000
	부대토목	○ 315,290천원	× 1 식	315,290
<b>소 계</b>				<b>3,227,920</b>
이 사 비	사무집기(비품) 이전	○ 90,000천원	× 1 식	90,000
	세금 이전	○ 5,700천원	× 1 식	5,700
	인터넷 이전	○ 19,800천원	× 1 식	19,800
	전화 이전	○ 10,800천원	× 1 식	10,800
<b>소 계</b>				<b>126,300</b>
<b>합 계</b>				<b>3,567,000</b>

## ■ 학생교육원 영월야영교육장 신설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 폐교활용 수련시설 확충사업에 따른 부지 및 건물매입(교육재정과)
- 안전진단 실시 결과 D등급 판정으로 인한 폐교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시설사업소)
- 안전확보 및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부지 주변 경계 펜스 설치(약240m)
- 시설사업비(영월폐교 유희부지 캠핑장 조성) 2018년도 본예산 편성(시설관리본부)
- 舊관운초 유희부지 활용 사업 추진으로 2018년도 본예산 편성(학생교육원)

#### 2. 비용추계의 전제

- 1단계(2013년): 폐교활용 수련시설 확충사업으로 인한 부지 및 건물매입
- 2단계(2016년): 안전진단 실시결과 D등급 판정으로 인한 폐교 철거
- 3단계(2017~2018년): 舊관운초 유희부지 활용 사업으로 추진 2018년 본예산 편성
- 4단계(2019~2020):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특화캠핑 운영, 4월~10월(7개월) 하절기 한시 운영
- 5단계(2021~2022년): 교직원 연수(워크숍) 지원, 교육가족 휴양시설 활용 등 수련교육 시설로 활용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013)	2차년도 (2016)	3차년도 (2017)	4차년도 (2018)	5차년도 (2019)	합계
구분	교육비특별회계	1,162,000	150,000	19,800	790,465	6,415	2,128,680
	소계(a)	1,162,000	150,000	19,800	790,465	6,415	2,128,680
세출	부지 및 건물 매입비	1,162,000					1,162,000
	부대조성비		150,000	19,800	790,465		960,265
	비품구입비					6,415	6,415
	소계(b)	1,162,000	150,000	19,800	790,465	6,415	2,128,680
□ 총 비용(a-b)		0	0	0	0	0	0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2013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합계
구분							
국비		1,162,000	150,000	19,800	790,465	6,415	
시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1,162,000	150,000	19,800	790,465	6,415	2,128,680

#### 5. 덧붙이는 의견: 없음

6. 작성자: 학생교육원 운영지원과 교육행정주사보 이문수(☎ 031-5175-8636)



##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비 고
부지 및 건물 매입	○ 1,162,000천원 × 1 식	1,162,000	교육재정과(2013)
폐교 철거 및 폐기물처리 비용	○ 150,000천원 × 1 식	150,000	시설사업소 (2016 본예산)
부지 주변경계 펜스 설치	○ 19,800천원 × 1 식	19,800	학생교육원(2017)
카라반 10대 구입	○ 270,000천원 × 1 식	270,000	학생교육원 (2018 본예산)
시설사업비 캠핑장 조성	○ 409,000천원 × 1 식	409,000	시설관리본부 (2018 본예산)
경계주변 안전펜스	○ 65,308천원 × 1 식	65,308	
대피소 차양	○ 39,817천원 × 1 식	39,817	학생교육원 (2018)
CCTV 4대	○ 6,340천원 × 1 식	6,340	
사무집기(비품) 이전	○ 6,415천원 × 1 식	6,415	학생교육원(2019)
<b>합 계</b>		<b>2,128,680</b>	

【별첨 3】

<b>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b>				
관리번호	2019A서울교육016			
정책명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행정관리담당관		
	담당자명	황혜은	전화번호	02-3999-357
담당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정책안전기획관		
	담당자명	민경식	전화번호	02-399-9310
체크리스트 제출일자	2019년 07월 24일			
완료(제외) 통보일자	2019년 07월 29일			
<p>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9년 07월 29일</p>				

## 【별첨 4】

### 관계법규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 1.] [법률 제11212호, 2012. 1. 26., 타법개정]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3. 1.] [서울특별시조례 제6956호, 2019. 1. 3., 일부개정]

제12조(직속기관 등의 하부조직 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조직과 공무원의 직급은 시·도 교육청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 또는 조례의 위임에 따른 교육규칙으로 정한다.